
2020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0. 2. 28.



법무부

목 차

I. 2019년 성과와 평가	1
II.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7
III. 주요업무 추진계획	9
1.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정립	10
2. 민생 안정으로 국민이 편안한 사회 실현	12
3.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 구축	16
4.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사회 구현	19
《현안 및 갈등과제》	22
IV. 2020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6

【별첨】 국정과제 추진현황

I. 2019년 성과와 평가

2019년 성과

□ 검찰 권력 분산을 통한 검찰 개혁 제도화의 기틀 마련

-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 1.)
- 검·경의 지휘·감독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실질화하며,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을 제한하는 등 수사권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20. 2.)

□ 민생 중심의 검찰권 행사를 위한 검찰 기능 재편

-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여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외 4개청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19. 10.)
-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권 행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4부 등 직접수사부서 13개를 형사부 10개와 공판부 3개로 전환하고, 기존 형사부 7개를 공판부로 전환('20. 1.)

※ 비직제 형사부 59개를 정식 직제화하여 형사부 강화

□ 인권보호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검찰상 확립

- 형사사건 공개의 원칙적 금지, 전문공보관 및 형사사건공개심의 위원회 도입, 공개소환 폐지 등을 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19. 12.)
-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별건수사를 방지하는 등 충실한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시행('19. 12.)
- 변호인 참여권을 모든 사건관계인에게 확대하고, 검사 상대 변론 기회 보장 등 변론권 강화를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20. 1.)

□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검찰의 특권 폐지

- 검사장실 면적 축소 등 검찰시설 기준을 변경하는 「법무시설 기준 규칙」 개정('19. 7.)
- 차관급 처우의 일환인 검사장 전용차량 제공 중단 등 「검찰 수사 차량 운영규정」 제정('19. 10.)

□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로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확보

- 검사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확대, 징계 절차상 기피·회피제도 도입 등 검사 징계의 실효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19. 4.)
-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범위를 확대하고, 검찰의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신설 등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19. 10.)
- 인사·재산 검증 대상을 기존 차장검사에서 부장검사까지 확대하고 ('20. 1.), 적격심사대상 검사 세평 수집 등 감찰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 감찰담당관실 인원 8명 증원('19. 12.)
 - ※ 검찰은 조사협조자 정보 누설 금지 등 조사협조자와 제보자 보호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개정('20. 1.)

2019년 평가

-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으로 검찰개혁의 제도적 기반 마련
 - 공수처법 제정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에 보다 엄정한 대응과 검찰권에 대한 견제 가능
 -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 관계로 개선하여 권한을 분산시키고,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인권보장 강화
-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감찰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 노력
- 변화된 형사사법체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자체 개혁 방안 추진 필요

2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 구현

2019년 성과

□ 일상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수사역량 집중

○ 토착비리 및 생활밀착형 범죄 집중 수사

-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수사를 통해 브로커 등 지역 토착세력 범죄 및 보조금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 강화

※ 지역토착비리 사범 656명 단속, 224명 구속('18.1.~'19.12.)

○ 불공정 갑질 범죄 처벌 강화

- 특혜성 채용비리,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공공·민간분야 갑질 범죄, 서민·청년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상 갑질 범죄 적극 수사

□ 공정한 경제질서 실현을 위해 노력

○ 전자증권제도 도입

- 기업 지배구조 및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탈세 방지, 혁신금융기반 구축 등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19.9.)

※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향후 5년간 최대 9,045억 원의 경제 효과 기대

○ 소수 주주 권리 강화 방안 시행

- 주주들의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사업 보고서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상법 시행령」 개정('20.1.)

2019년 평가

○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 갑질 범죄 엄단을 통한 공정문화 확산

○ 상법 등 공정경제질서 관련 주요 법안이 국회 장기 계류 중에 있어 입법 지연,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의 협조 필요

※ 상세 내용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④-2.(제20쪽), 현안 및 갈등과제 ①(22쪽) 참조

3 **민생 안정으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실현**

2019년 성과

□ 서민의 안정적 주거·영업 환경 마련

- 청년·서민의 주거·영업비용 절감, 소상공인들의 자유로운 매장 점유·활용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 1.)
 -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리모델링, 세입자의 임시관리인 선임권 등 도입

□ 일상생활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 대규모 민생침해 범죄 엄정 대응
 - 다수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다단계사기 등 악질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
 - ※ 총 200건, 519명 기소(161명 구속), 피해액 총 3조 3,100억 원('17. 6. ~ '19. 11.)
 - 서민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19. 3.)
 - ※ 주요 민생침해 범죄 21건, 총 1,357억 원 몰수·추징보전('18. 11. ~ '19. 11.)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강화
 - 신속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19. 11.)
 -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증원으로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강화
 - ※ '18년 대비 '19년 피해자 국선변호 2,732건(12.0%), 진술조력 499건(29.0%) 증가

2019년 평가

- 서민·소상공인 등의 안정적 주거·영업을 위한 경제 입법 지속 추진
- 서민 범죄피해자에 대한 편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방안 마련 필요

4

인권가치를 우선하는 포용적 법무행정 추진

2019년 성과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 법률홈닥터와 법률구조공단 연계로 법률복지 강화

- 서민 대상 법률홈닥터 제도를 '다부처연계시스템'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원스톱 법률구조서비스 제공('19. 6.)

※ '19년 법률홈닥터 총 56,145건 지원 실시

○ '무변촌 제로(ZERO)' 달성

- 전국 모든 무변촌(376개 읍·면·동)에 마을변호사 위촉('19. 12.)

※ 전국 1,442개 읍·면·동에서 1,444명의 마을변호사 활동 중('20. 1.)

□ 검찰 내 인권보호 기능 강화

○ 인권감독관 전면 확대

- 모든 지방검찰청에 인권감독관 배치하고, 대검·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친 우수검사들을 인권감독관에 보임

※ '17. 8. 5개 지검 → '18. 7. 12개 지검 → '19. 8. 14개 지검 → '20. 2. 18개 지검

○ 대검 '검찰인권위원회' 설치

-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20. 2.), 검찰 제도개선, 개혁방안 등 중요 사안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

○ 인권·민생 중심의 검사 인사 실시

- '20년 정기인사 시 우수 인권감독관·인권검사를 주요보직에 발탁

2019년 평가

- 인권 중시 수사관행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해 지속 노력

Ⅱ.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형사사법제도의 확실한 변화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큰 상황**
 - 공수처 설치, 수사권개혁으로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제도 완성 필요
 - ※ 국민 65.2% 공수처 법안 찬성('19. 12. 리얼미터), 52.4% 수사권개혁 찬성('20. 1. 리얼미터)
 - ※ 임기 후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국민 24%(2위)가 권력기관 개혁 선정('19. 11. 리얼미터)
- **공정하고 건강한 경제 질서에 대한 국민적 요구**
 -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서민 주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질 수 있는 정책 추진
-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
 - 민생사건 수사에 검찰 역량을 집중하고, 전자감독 등을 활용한 범죄 예방과 교정교화를 통한 재범방지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
- **더욱 치열해진 국제 경쟁 속에 내부적 포용과 통합 절실**
 -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극단적 갈등상황을 해소하고, 내부적으로 더욱 통합하고 협력하여 상생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

2 정책추진 방향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성
형사사법제도 정립

민생안정으로
국민이 편안한
사회 실현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 구축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사회 구현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정립

1

검찰개혁 입법에 따른 변화된 수사시스템 안착

□ 권한 분산으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의 정립

- 해방 이후 처음으로 검찰개혁 입법이 이루어져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정립의 적기
- 국민을 위해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제도 정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 적극 지원

- '20. 7. 차질 없는 공수처 출범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준비단 설치, 법령 정비 등 설립준비단 업무 지원
 - 공수처 직제편성, 대외기관 협력 등 조직 업무, 공수처 수사 및 공소제기 관련 각종 규정 마련 등 법령 업무 수행
- ※ 기획조정실장이 지문위원으로 참여, 조직분과 및 법령분과에 각 검사 1명 파견

□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관련 후속조치

- '법무부 후속조치 TF' 구성('20. 2.)
 - 수사준칙 등 법무·검찰의 주요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인력·형사사법시스템(KICS) 개편
 - 검찰과 긴밀한 협조로 새로운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조치
-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 참여
 - 단순히 검찰·경찰 두 기관 간의 권한 배분이 아닌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대통령 직속 추진단 출범('20. 2.)
 - 국무총리실·행안부·기재부·특사경기관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 중심의 올바른 수사시스템 정립을 위해 노력

□ 인권과 민생을 우선하는 검찰권 행사로 국민 신뢰 회복

- 공개소환 폐지, 심야조사 제한 등 새로 제정된 인권 친화적 수사 규범의 정착을 위한 교육·감찰 강화, 전관특혜 근절 등 지속 추진
- 형사·공판 강화로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 처리, 출석조사의 최소화, 신중한 출국금지 등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생 중심의 검찰권 행사

□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찰 직접 수사에 대한 실효적인 내·외부 점검 방안을 검토
-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평적 분권형 형사사법 모델 마련

□ 국민이 공감하는 조직문화 개선

- 검찰조직 문화 개선이 국민 중심의 검찰권 확립을 위한 기본전제라는 인식 하에 자체적인 검찰 개혁 지속 추진
 - 수평적 조직문화 확립, 검사 이의제기 제도의 실질화 등 검찰 운영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 정립
- ※ 사회적으로 양성평등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만든 서지현 검사를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으로 임명해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업무 추진

□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공소장 공개 기준 마련

- 공개재판 개시 전 공소장 전문이 언론 등에 공개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는 관행 시정 필요
- 상충되는 헌법적 가치의 비교형량과 조화로운 해석 및 형사절차 단계와 사건 특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공소장 공개 여부를 결정

2

민생 안정으로 국민이 편안한 사회 실현

1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코로나19 신속 대응

□ 상황 변화에 맞는 신속한 대응 조치 실시

- 코로나19 상황 발생 직후 전염경로 차단 등 단계별로 촘촘히 대처해 왔고,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경로 및 발병원인을 파악하고 확산을 방지하는데 주력
- 외국인 출입국에 대한 주무부서로서 일선 현장을 충실히 점검하고, 모든 실·국·본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효율적인 대책 수립
 - 법무부장관 인천공항 출입국심사 및 검역 현장 2회 방문('20.1./'20.2.), 법무부차관 주재 종합대책반 점검회의 매일 실시('20.2.)

□ 국내 감염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

- 중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통한 연락처 확인 후 입국하도록 선제적 조치(2.4.)
- 중국 후베이성 발급여권 소지자 입국차단, 우한총영사관 발급 유효사증 효력정지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결정에 따른 입국제한조치 시행(2.4.)
 - 최근 1일 입국 중국인 수 3,000여 명으로 기존의 1/6로 급감
 - ※ 81,589명 사증 효력정지, 12,927명 현지 탑승차단 등(2.22. 기준)
- 중국 모든 공관에서 비자 신청 시 자필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의무화, 잠복기를 고려하여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치도록 비자 심사기준 강화
- 요코하마 정박 크루즈 탑승 승객 및 승무원 입국 차단(2.19.)
 - 일본 요코하마 정박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 외국인 승객 및 승무원에 대한 국내 입국(환승포함) 차단조치 시행

□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

-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되어오던 사회적응 프로그램 일시 중단(1. 28.)
-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외국어 통역 지원 강화(1. 28.)
 - ※ '20. 1.~ 2. 누적 상담 건 수 2만여 건
- 전국 모든 교정 및 보호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잠정 제한(2. 24.)
 - ※ 기결 수용자는 원격 스마트 접견 실시, 미결 수용자는 전화사용 허가
- 국내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체류기한 일괄 연장 조치(2. 24.)
 - 2. 24. ~ 4. 29. 만기가 도래하는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의 체류 기한을 사무소 방문 없이 4. 30.까지 일괄 자동 연장(9만 2천여 명)
- 유학생의 개인 이동 억제를 위해 비자연장 등 각종 민원 신청을 각 대학 유학담당자가 단체로 모아 일괄 신청하도록 조치(2. 24.)

□ **기관 간 협업 조치**

- 외국인근로자 입국 지연에 따른 사업장 인력난 해소 지원(2. 14.)
 - 중국·베트남·태국 국적 비전문취업 및 선원취업 자격 외국인에 대해 최대 50일까지 체류기간 일괄 연장
 - ※ 고용부, 해수부 등과 대상자 선정 및 시행 시 협업
- 중대본·질본·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출입국관리정보 지속 제공
 - 중국인 유학생 항공편(출발지 포함) 및 체류정보, 위험지역 입국자 체류 정보, 검역관리대상자 출입국관리정보 등 제공('20. 1. ~ 2. 64만여 건)
 - 대구 신천지 교회 관련자 8천여 명에 대한 출입국기록 제공(2. 23.)
- 국내 감염자 및 접촉자 국외 이동 차단을 위한 출국금지 예정
 - 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에서 국내 감염자 및 밀접 접촉자의 국외 이동차단을 위한 출국금지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

□ 재범 억제를 위한 전자감독 확대 실시

○ 빈틈없는 전자감독 실시로 범죄발생 예방

- 고위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1:1 전담 전자감독' 확대 실시('20. 12.)
※ 정신질환 또는 성범죄 전력 3회 이상 대상자 194명으로 확대('20. 2. 26. 기준 8명)
- 전자감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 시행('20. 8.)
-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 확대로 범죄자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20. 8.)

○ 전자감독 대상자의 행동 통제를 통한 선제적 재범방지 추진

- 지자체 CCTV를 활용한 감독 강화('20. 12.까지 서울·경기도 등 연계)
- 주취범죄 예방을 위해 음주여부를 상시 탐지하는 첨단 장비 개발('21년)

□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강화

○ 중증환자 집중치료 시설 구축

- 치료감호소 내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축(400명 수용, '20. 7. 착공)

○ 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 출소한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형기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 도입 등 「치료감호법」 개정 추진(제20대 국회 통과 노력)

□ 회복과 치유를 통한 소년범죄 예방

○ 비행 원인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업 강화

- 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 범정부 '소년비행예방협의회'(의장: 법무부장관, '18. 6. 설치)를 활성화하여 촉법소년 등 저연령 비행청소년에 대한 구체화된 지원 방안 수립·시행

○ 종합적 소년정책 마련을 위한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운영

- 학계·인권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정책제안기구 설치('20. 3.), 비행 초기부터 사회복귀까지 일관된 맞춤형 종합정책 실시

□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영업 보장제도 마련

○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임대차 법제 개선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제20대 국회 통과 노력)
-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의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청구권을 보장하는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제20대 국회 통과 노력)

○ 서민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 채권추심업자의 소멸시효 통지의무 부과 및 시효도과 채권 추심 제한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제20대 국회 통과 노력)
-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 편리한 자금조달을 위해 동산·채권·지식 재산권을 일괄하여 공동담보로 설정하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산채권담보법」 개정 추진('20. 3. 국무회의 상정 예정)

□ 서민 보호를 위한 형사정책 추진

○ 불특정 다수 서민 대상 범죄피해 회복 방안 마련

- 보이스피싱, 다단계 등 범죄피해자산을 국가가 몰수하여 반환 가능하도록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19. 8.)
- 다수 서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조직적 사기범행에 대해 신속하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 국민들이 쉽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환부절차, 방법 등을 구체화한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에 대해 타부처와 협의를 거쳐 '20. 2. 입법예고

○ 대부업체 등의 '묻지마 고소' 각하제도 확대 시행

- 다수의 서민들이 단지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 기망행위나 명백한 범행 정황의 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수사 없이 각하로 종결('20. 1.)

3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 구축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를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 변호인 조력권 실질화
-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 「형사소송법」·「법률구조법」 개정 추진(제20대 국회 통과 노력)

□ 사법절차 취약계층 지원 확대

-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 반영 추진
 - 이혼소송 시 미성년 자녀의 진술청취 의무화, 양육비 이행확보 방안 마련 등 「가사소송법」 개정 추진(제20대 국회 통과 노력)
- 치매환자·학대피해노인 등에 대한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약자에게 후견인 선임 등 지원하는 공공후견인 제도를 강화하고, 직업상 결격사유 등 피후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을 전담하는 ‘지원변호인 제도’ 도입
 - 하나센터 상담사와 전담 변호인을 연계, 경제적 곤란 등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대한변호사협회·남북하나재단 등과 협의 중)

□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 스토킹범죄에 징역형 처벌 규정, 재발방지를 위한 응급·잠정조치 도입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20. 3. 법제처 심사)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응급·긴급임시조치 유형 추가, 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 등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제20대 국회 통과 노력)

□ 수용자 인권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추진

○ 과밀수용 해소를 통해 수형자 교화 효과 상향

- 교정시설 신·증축 등으로 1,180명 수용공간 확충('17.~'19.), 단계적으로 4,000여명 수용 공간 추가 확충 예정('20.~'23.)

※ 수용률 : '17년 119.8% → '18년 114.5% → '19년 113.8% → '20. 2. 111.1%

- 수용동 증축 등 현대화가 진행된 7개 교정시설의 경우 징벌건수가 7.2% 감소, 교정환경 개선으로 범죄감소에 긍정적 효과 발생 기대

○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인권친화적 지원 확대

- 여성수용자의 6세 이하 미성년 자녀에게 동화책을 녹음하여 전달하는 '엄마의 목소리' 시행 확대('19. 8.부터 11명 41회 실시)
- 수형자의 교정작품 홍보 및 구매 편의성 향상을 위해 '19. 8. 구축한 교정작품 인터넷 쇼핑몰(<https://corrections-mall.net>) 활성화, 판매 대금은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으로 지급하여 사회정착 지원

□ 병역의무와 소수자 인권이 균형을 이루는 대체복무제 시행

-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대체복무(교정시설 생활관에서 36개월 합숙 복무)를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20. 1.)

- 대체복무교육원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고('20~'23년), 현역병과의 형평성 및 대체복무요원의 인권을 고려한 합리적인 업무 및 복무관리 방안 마련

※ '20. 10. 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대체복무제도 시행 예정(매년 540명 예상)

□ 국민이 공감하는 적극적 사회통합 정책 추진

- 250만 명의 체류외국인과 국민이 서로 상생·포용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

▶결혼이민자·재한동포·이주아동 등 체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외국인의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탄력적 체류관리 시스템' 시범 실시
 ▶경미한 법위반에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실효적 체류질서 확립 방안 추진
 ▶공익투자이민 투자금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우수 기업에 낮은 금리로 대출 지원

-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이민·통합기금' 도입 추진
 - 외국인의 출입국 수수료·범칙금 등('19년 1,173억 원)을 재원으로 조성
 - 마련된 기금은 사회통합·국경관리·체류관리·외국인보호 등 외국인 관련 정책사업, 저소득 내국인 취업지원·교육 등을 위해 사용
- ※ '18. 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의원 입법 발의(제20대 국회 통과 노력)

□ 안전과 선순환의 인적교류를 위한 국경·체류 관리

- 전자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도입('20. 8.)
 - *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사증 없이 사전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 '20. 6.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재입국 기회 부여, '20. 7.부터 자진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 및 미납 시 입국금지 강화

□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심사제도 운영

- 충실하고 전문적인 난민심사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적극 추진
 - 난민전문가 추가 채용, 유엔난민기구와 공동으로 직무교육 운영('18. 1.), 관련교육 이수 의무화('19. 4.) 등 난민심사 전문성 지속 강화
 - 난민전문통역인 풀(pool) 정비, 난민통역 교육 강화 등 통역 품질 제고
- 진정한 난민에 대하여는 절차적 권리 및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남용적 난민신청은 억제하는 합리적인 난민법 개정 추진('20년)

4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사회 구현

1

법치 확립과 선거사범 공정수사

□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원칙있는 대응으로 사회혼란 방지

- 감염병 발생 상황 관련하여 국가 방역체계의 작동을 방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대응
 - 법무부는 대검에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엄정 대응하도록 지시하고('20. 1.),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학조사 방해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조치('20. 2.)
 - 검찰은 ① 허위조작정보 유포, ② 환자 등 개인정보 유출, ③ 보건용품 등 매점매석, ④ 치료·진료 거부, ⑤ 역학조사 거부·방해 등 신속·철저하게 집중 수사
- ※ 서울중앙지검은 2개팀 5개반의 ‘코로나19 대응TF’ 구성('20. 2.)
- 대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수사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 수립 및 일선 시달, ‘코로나19 대응 TF’ 설치('20. 2.)
 - 피조사자 소환, 체포·구속, 형집행 등 단계마다 대상자의 감염 여부 등 철저히 확인, 사안에 따라 소환 연기, 구속·형집행정지 등 조치
 - 감염병 관련 추정 변사체 발생 시 부검 전 감염여부 등 검사 지휘

□ 제21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공정수사

- 전국 검찰청에 ‘선거사범 전담반’ 설치('19. 10.),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진행
 - 특히 ① 금품수수, ② 여론조작, ③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사건을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 원칙적으로 직접수사
-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필요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양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
- ※ 대검 ‘전국 검사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 개최('20. 2.)

□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 주주·소비자 보호 강화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경영의 투명성·합리성 확보 및 지속성장 기반 마련

※ 13건의 「상법」 개정 의원안 법사위 계류 중, 제20대 국회 통과 노력

※ 관련 내용은 현안 및 갈등과제 ①(22쪽) 참조

○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한 「공익법인법」 개정

- 정경유착에 의한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 방지,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관합동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등 추진

※ '20. 6. 입법예고 예정(국무총리실 등 관계 기관 협의 완료)

○ 다수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

- 증권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제조물책임, 부당표시·광고, 담합 행위, 개인정보유출, 식품, 금융투자상품 분야에 확대 도입

※ 법사위 계류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의원안 제20대 국회 통과 노력, 이후, 분야 제한 없는 전면적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 추진

□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 정착 노력

○ 특정경제사범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제도의 합리적 운영

- 판결문 등 자료를 검토·분석하여 위반 의심사례를 선정하고, 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

-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취업승인 신청 및 취업제한 위반 사례 등에 대해 심의

※ 취업제한 사실 등 통지 1,401명, 취업승인 결정 1명('18. 9. ~ '20. 1.)

○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 마련

- 전문가·노동계·경제인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UN, OECD 등 국제 기준에 합치하는 인권경영 표준지침 마련 및 배포('20. 4.)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마련

- 공정한 사법절차 보장을 위해 학계·대한변협·검찰 등 전문가로 구성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 구성(’19.11.), 구체적 방안 논의

◇ 변호사 수임·변론 관련

- ① 공직퇴임 변호사 수임제한 기간 연장, ② 본인사건 취급·몰래변론 처벌 강화

◇ 법조브로커 퇴출

- ① 재판·수사 공무원의 사건 알선 제재 강화, ② 퇴직공직자 등 미등록 직원에 대한 제재 신설, ③ 변호사의 지도·감독 책임 및 양벌규정 신설

◇ 수사절차상 전관특혜 근절 방안

- ① 전화변론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차단, ② 변호인 및 변론유형을 KICS 및 형사사법포털시스템에 공개, ③ 전관특혜 감시·관리·실태조사 등 업무 총괄자 지정

◇ 법조윤리협의회 기능강화 및 징계기준 마련

- ① 법조윤리협의회 인력 확충 및 권한 강화, ② 변호사징계기준 신설

□ 신속하고 편리한 형사절차 구현을 위해 차세대 KICS 구축

- 첨단 IT기술을 형사사법업무에 구현, 음성인식조서·원격화상조사(’24년 시행)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 증거자료의 전자화 등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수사·재판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여 신속하고 편리한 형사절차 구현

□ 수용자 검찰조사 시 출정업무 개선

- 검사실에서 수용자를 반복 소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수사기법의 부적절성과 교정업무 부담 등이 문제로 지적
 - ※ 다단계 사기 구속 수용자를 반복 소환하고,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언론 보도된 사안에 대하여 대검에 신속한 감찰 지시(’20. 2.)
- 당해사건과 무관한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소환을 제한하고, 교정시설 출장조사·화상조사 활용 등 수용자 소환조사 방식 개선방안 수립

현안 및 갈등과제

1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 필요

-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 조성 필요

□ 갈등 상황

- 경영계는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

도입 제도	주요 내용	경영계 의견
다중대표소송	▶ 출자기준 50% 초과 자회사에 대하여 다중대표소송 도입 ※ 다중대표소송 : 자회사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	▶ ① 자회사 법인격 부인, ②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 간 소제기의 평등권 침해 등 이유로 반대
전자투표제 의무화	▶ 일정 수 이상의 주주수를 가진 상장회사는 전자투표 의무화	▶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와 병행 논의 필요
집중투표제 의무화	▶ 일정 자산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소수주주의 청구에 따라 집중투표 실시 의무화 ※ 집중투표제 : 각 주주가 1주마다 이사 후보자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고, 후보자 1명 또는 수명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제도	▶ ① 주주평등원칙에 배치, ② 특정 소수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기능할 우려 등 이유로 반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 감사위원 중 일부를 이사 선출단계에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선출하도록 개정	▶ ① 경영권 위협 우려, ② 투기성 외국계 펀드 등의 권한 남용 가능성 등 이유로 반대

□ 향후 조치계획

- 각종 토론회, 언론 등을 통해 상법 개정 필요성을 홍보하고, 주요 경제단체, 시민단체와 지속적 소통
- 실무상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하며 경영계 설득

□ 합리적인 출입국정책 추진 필요

-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저소득국민의 일자리 잠식, 범죄를 저지른 경우 거주지 불확실성에 따른 사회불안 문제 등 우려

* '17년 251,041명(20.1%↑) → '18년 355,126명(41.5%↑) → '19년 393,012명(10.7%↑)

- 최근 난민신청* 증가로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보호하자는 의견과 세금으로 난민 생계비 지원에 대한 반감, 유럽 국가들의 난민수용 실패 사례 등을 들며 반대하는 입장 상존

* '17년 9,942명(31.8%↑) → '18년 16,173명(62.7%↑) → '19년 15,452명(4.5%↓)

□ 갈등 상황

- 국민은 대체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강화를 원하고 있으나, 영세 사업주의 지속적인 불법 고용 수요 및 직접 단속에 따른 안전 사고 위험에 대한 고려도 필요

-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인권위원회·변호사협회·시민단체 등도 반대 및 우려 입장 지속 표명

※ 난민 신청요건 강화 반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국외송환규정 삭제, 허위난민신청 및 알선·권유자 처벌조항 삭제 등

□ 향후 조치계획

- 국내 수용이 곤란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은 지속 추진하되,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외국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

- 사업장 계도 활동 등을 통한 자발적인 귀국 유도과 불법 고용주에 대한 제재 강화, 영장집행을 통한 단속 활동 병행

※ 불법 고용주 처벌 강화 등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제20대 국회 통과 노력)

-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 해외 입법사례 연구 분석 및 인권·시민단체와 간담회 등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후 입법절차 진행

□ 교정·보호시설에 대한 기피

- 시설 노후화·과밀수용 등의 문제로 교정·보호시설의 이전·신축이 필요하나 기피시설이라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 빈발

□ 갈등 상황

○ 안양교도소 재건축

- 노후시설로 재건축 또는 이전 시급, 재건축은 안양시에서 협의 거부
- 기재부에서 안양교도소·서울구치소 등을 이전하여 의왕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

○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 '13년 성남시 수정구 청사 임차기간 만료로 분당구 이전 추진하였으나 주민반대로 무산, 현재 비정상적으로 분산 운영 중
- 부지 선정을 위해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지역 간 갈등으로 청사 이전 담보상태

○ 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

- '19. 6. 부산시에서 강서구 이전 부지 추천에 따라 부산 교정시설 통합 계획, 강서구 주민 및 일부 지역구 의원 반대
- ※ '19. 6. 법무부·부산시 간 부산교정시설 이전 MOU 체결

□ 향후 조치계획

-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조성, 지자체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 지원으로 갈등 해결 모색
 - ※ 거창 법조타운 신축 시 5자 협의체(법무부·거창군·주민단체 등)를 결성, 주민투표 등을 통해 갈등 해소 및 기반시설·주민편의시설 조성 지원
- 갈등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의견 수렴
 - ※ '19. 10. 법무부·태백시는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정시설 신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ISDS 대응체계 개선 필요성

- 대한민국 상대 7건의 ISDS 사건이 제기되어 현재 4건 진행 중

진행 중 사건			완결 사건		
원고	청구금액	진행상황	원고	청구금액	소송결과
론스타	46.9억 USD (5조 1천억 원)	진행 중	하노칼	2.5억 USD (2,750억 원)	'16. 7. 26. 종료(취하)
엘리엇	7.7억 USD (8,470억 원)	진행 중	다야니	935억 원	'18. 6. 6. 국가 패소 (730억 원)
메이슨	2억 USD (2,200억 원)	진행 중			
윈들러	1.9억 USD (2,300억 원)	진행 중	미국인 개인투자자	300만 USD (33억 원)	'19. 9. 24. 국가 승소

- 법무부는 '19. 4.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에 의해 주무부처로 지정·소송 대응, 향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예방을 위해 대응체계 개선 필요

□ ISDS 대응 전담조직 신설 및 우수인재 확보

- 종전 국제법무과에서 대응하여 왔으나(미국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15명), 대응역량 강화 및 전문성 축적을 위해 별도 전담조직 신설 필요
 -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분쟁대응단 직속의 특별 전담팀을 설치하여 변호사 자격자 18명이 상시 대응 예정('20. 3.)
- 부이사관 급의 외부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하여 행안부·인사혁신처 등과 협의 하에 전담조직 확대, 우수인재 확보 방안 추진

□ ISDS 예방체계 마련 및 실행

- 향후 외국투자 유치와 이에 대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분쟁 빈발 발생 분야에 대한 정기 점검 실시
- KOTRA 외국인투자 움부즈만 제도와 연계하여 주요 민원 발생 시 정보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 간 협업 강화
- 외국인 투자자 관련 정책을 시행할 때 자문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실무자 대상 ISDS 예방교육 실시

IV. 2020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0 국민의 삶, 이렇게 바뀝니다



‘인권과 민생’ 중심의 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시대적 요구에 따라 입법화 된 공수처 설치, 수사권 개혁 등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 정립을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정착, 민생 중심의 검찰권 행사, 검찰조직문화 개선 등으로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민생 안정으로 국민이 편안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코로나19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수용시설과 민원 방문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을 촘촘히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 전자감독제도 강화,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등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와 영업환경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등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과밀수용 해소 등 수용자 인권증진과 대체복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250만 명의 체류외국인과 국민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정책을 통해 상생 도약을 이루겠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공정경제 입법을 통해 기업경영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를 마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조작정보 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 수사 체계를 확립하며, 전관특혜 근절로 사범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실천과제	추진현황	향후계획
①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국정농단의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재판 진행 중인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공소유지 - 대법원에서 박근혜 前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액 증액('19.8), 파기 환송심 진행 중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죄에 맞는 형이 선고·확정 되도록 추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범죄수익환수 등 후속조치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재산 동결 완료 ○범죄수익환수 관련법 개정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19.4.) - 부패재산물수법 개정('19.8.)	○최순실 등 사건 판결 확정 시 범죄수익환수 추징 ○부패재산물수법시행령 등 제·개정
②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예산낭비의 방지	○국민소송제도 관련 의원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 - 국민소송제도 입법지원의 일환으로 법안 발의 의원실과 간담회 개최('19.10.) -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 개최('20.1.)	○지속적인 입법지원 및 제도 도입을 위한 홍보 활동 진행 예정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국민 권익 보호	○다중인명 피해범죄 법정형 상향 등 통한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추진 - 다중인명 피해 범죄 사건 선고형 분석('19.3.) - 다중인명 피해범죄 법정형 상향 「형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의원실 설명 등 국회 논의 지원 계속('19.6.~)	○다중인명 피해범죄 법정형 상향을 위한 「형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가칭)'의 설치	○「공익법인법」 전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 의견 조희 및 이견 조율('19.2.~'19.12.) - 이견조율에 따른 수정안 완성	○개정안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후 21대 국회에 법안 제출 예정

⑥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국민 인권 보호 강화	○「인권기본법」 법무부안 마련 및 국가인권위와 관련 업무 협의 중	○국가인권위와 협의하여 신중 추진
	국가권력 불법사찰 근절	○통신제한조치 총 연장기한 신설 등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제 등 정비('19. 12.)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공포('19. 12.) ○불법사찰 관련 법령 또는 지침 제·개정 -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 법정형 상향 「형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논의 지원 계속('19. 6.~)	○긴급통신제한조치 관련 규정 개정 등 필요 절차 진행 예정 ○직권남용죄 법정형 상향을 위한 「형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인재근 의원 발의 「고문방지법」안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미상정 상태로, 소위 검토 시 원활한 심사 지원을 위한 관련 연구 및 협의 실시 ※ 보상절차 및 피해자 등록기준 등을 보완한 수정안 마련 ('19. 5. ~ 8.) 및 의원실 업무 협의('19. 10. ~ 12.)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재정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 ('19. 1. ~ 9.) -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19. 11.)	○수정안을 반영하여 법사위 심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실과 적극 협의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노력 및 제도 도입 기반 마련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확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지원 대상 확대 - 적법체류 결혼이민자에 대해 구조금 지급 ○스마일센터 추가 설치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 기관 개혁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근절을 위한 공수처 설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20. 1.) ○ 검경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검·경간 견제와 균형 달성 - 수사권개혁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공포('20. 2.)	○ 공수처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업무 지원 ○ 수사권개혁 관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진행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 개선된 인사 제도에 따라 최초의 검사 정기인사 실시('19. 2.) ○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개정('19. 5. / '20. 2.) ○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예규) 2차례 개정('19. 3. / 12.) ○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 제정·시행('19. 10.) ○ 「검사징계법」 개정안 공포·시행('19. 4.)	○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등 지속 추진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및 생활안전분야 역량 강화	○ 교정 등 수용시설, 장비확충 및 현대화 - 대구(교) 70%, 강원북부(교) 87%, 거창(구) 공사 재개 등 교정시설 조성사업 추진으로 교정시설 과밀화 완화('19. 12.) - 의료소년원 착공('19. 9.) ○ 생활안전분야 역량 강화 - 과밀수용 해소 인력증원 등을 위한 협의('19. 4. ~ 8.) - 일체형 전자발찌 전국보급('19. 7.) - 전자감독 협의회 운영(반기) - 불법체류 외국인 등 상시 단속 실시('19년 37,059명) - 새로운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 시행('19. 12.)	○ 교정시설 신축·이전 등 수용규모 확대 ○ 가석방 확대 지속 추진 ○ '전자보석' 안정적 시행 ○ 생활안전분야 역량강화 - 전자감독 협의회 운영(반기) - 가석방 전자감독 확대 실시('20. 8.부터) -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20. 7.부터 매 홀수월) - 유흥·마사지업소 불법취업 외국인 및 알선브로커 집중단속 등 기획조사 강화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대출채권 관리 강화	○채권추심법 개정 - 법무부 대안 국회 법사위 제출	○조속한 시일 내 국회 통과 목표 - 국회 논의 적극 지원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 구조 개선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한 법적기반 구축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조속한 시일 내 국회 통과 목표 - 국회 논의 적극 지원 및 대국민 홍보 지속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집단소송 등 도입	○'18.9. 도입방안 마련 및 법안 발의(김종민 의원안) - '20.2. 현재 법사위 계류 중 ○'19.9. 「확대·개선방안」 발표 - ①분야 제한 없이 전 분야 도입 ②증거개시명령제 반영 ③기존 사건에도 적용	○'20. 연내 새로운 법안 발의 등 입법방안 마련 ○'20. 국회 입법심사 지원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강화	상점가 육성 및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 -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의 보호 방안 관련 TF안 보완	○조속한 시일 내 국회 통과 목표 - 국회 논의 적극 지원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젠더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법제처 심사 의뢰('19.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의원 발의('19.11.) ○폭력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여성·아동 범죄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운영 - 전담인력 확대 및 지원 지속 ※ 피해자 국선변호사 17→21명, 상근진술조력인 12→15명	○법제처 심사가 완료 되는데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 예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강화 지속 - 피해자 국선변호 및 진술조력 전담인력을 확대하여 지방의 피해자 지원 강화